

교원 연구년제 운영세칙

제정 1991. 9. 1	개정 2008. 3. 1	개정 2016. 3.16
개정 1993. 3. 1	개정 2009. 7. 1	개정 2022. 3. 1
개정 2000. 1. 1	개정 2013. 3. 1	개정 2024. 1. 3
개정 2001. 6. 1	개정 2013. 9. 1	
개정 2004. 1. 1	개정 2015. 3. 1	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본 대학 교원의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구년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연구년이라 함은 본 대학에 일정기간 근무한 교원에 대하여 대학의 일상업무(강의, 학생지도 및 위원회 등)를 떠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허가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 및 기간) ① 본 대학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년 만료후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3년 미만인 교원은 제외한다.(개정: 2016.3.16)

1. 본 대학 전임교원 임용 후 또는 직전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, 6년 이상 근속한 교원은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3.16)
2. (삭제: 2016.3.16)

② 연구년의 기간은 학기 단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파견교원의 파견기간은 제1항의 연구년 신청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단, 제4조 제2호에 따라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파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개정: 2013.9.1.)

④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년 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. (개정: 2022.10.1)

1. 연구년 신청을 위한 근속기간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수행 등 대학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인해 연구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
2. 학과의 승인을 받아 타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본 대학 근무년수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

제4조(인원제한) 매학기 연구년 허가인원은 2개월 이상의 출장, 파견, 연수, 휴직 교원을 포함하여 학과 전임교원 총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허가인원 및 학과 전임교원 총수 산정시 제외한다. (신설: 2013.3.1)

1. 파견기관에서 인건비 등 전액을 부담하는 파견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파견 기간
2. 한국연구재단 등 대학의 필요에 의해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파견

3. 정관 제47조 제6호 또는 제11호에 의한 휴직으로서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
(신설: 2015.3.1.)(개정: 2016.3.16)

제5조(신분보장) 연구년 기간 동안 당해 교원의 신분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.
2. (삭제: 2008.3.1)
3. 연구년 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며, 연구년 기간중 승진 등은 계속 시행한다.
4. 연구년 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. (신설: 2013.3.1)(개정: 2016.3.16)

제6조(의무) ①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후 연구년 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 대학에 재직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년 퇴직으로 인해 연구년 기간의 2배수만큼 복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(개정: 2022.10.1.)

②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속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연구년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신청 및 승인절차) 연구년을 허가 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 6개월전에 교원연구년신청서, 학과주임교수추천서, 연구년활동계획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
제7조2(변경절차) 허가받은 연구년에 대한 변경(기간, 기관 등) 및 취소를 하고자 하는 교원은 변경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 연구년 변경 신청서를 소속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연구년 기간변경의 경우, 제3조 및 제4조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연구년 변경에 대해 사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. (신설: 2024.1.3.)

제8조(직무대행자의 임명) ① 연구년 수행 교원은 직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집중하여야 함에 따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과 각종 위원회 등을 담당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 (신설: 2024.1.3.)

②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의 소속학과 주임교수는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서는 대행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정: 2009.7.1., 2024.1.3.)

1. 강의
2. 학부학생의 지도업무
3. (삭제: 2024.1.3.)
4. (삭제: 2024.1.3.)
5. 학과 내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(개정: 2024.1.3.)

제9조(출장, 파견 및 연수 등과의 관계) 연구를 목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출장, 연수 및 제4조 제1호에 의한 최초 1년 이내의 파견의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구년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. (개정: 2013.3.1)

제10조(휴직과의 관계) ① 휴직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.

② 법인정관 제47조 제5호에 의한 휴직시에는 1년의 연구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영리목적의 활동 금지)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은 그 기간중 본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학술단체 및 산업체 등의 연구/산학협력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나 순수한 영리목적의 타기관 피고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금한다. (개정: 2016.3.16)

제12조(소환) 총장은 연구년을 허가받은 교원이 그 기간중 목적활동 위반시에는 즉시 소환을 명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1년 6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전 규정인 교원 연구년제 규정은 이 세칙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2. 단, 제5조 제4호의 개정내용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연구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4년 1월 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